

# 입찰 공고

대한한의사협회 가양동회관 옥상방수공사에 대해 아래와 같이 공개 입찰 공고합니다.

## 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- 입찰건명 : 대한한의사협회 가양동회관 옥상방수공사
- 세부내용

번호	세부내역	공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
1	옥상 방수 공사(벽면 포함)	- 빗물 등 고임 현상 없이 배수될 수 있도록 시공 - 외벽 우수배수관 교체(1개)

- 참고사항
  - 세부 내용은 협회 회관을 방문하여 확인
  - 공사면적 및 물량은 참여업체에서 반드시 실측하여 산출요망
  - 공사기간은 낙찰업체와 추후 협의

## 2. 대상물 개요

- 주소 :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
- 지하1층 ~ 지상5층 건물
- 옥상 시공 대상 면적 : 약 200평
- \* 붙임 6 도면 참조 요망

## 3. 참가자격 및 제출서류

- 참가자격
  - 전문건설업(방수) 면허등록 업체
  - 관련분야 실적을 보유한 업체
- 제출서류
  - 가. 입찰참가 신청서(본회 소정양식) 1부(붙임 1)  
\*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([www.akom.org](http://www.akom.org)) 공지사항 참조
  - 나. 입찰서약서(본회 소정양식) 1부(붙임 2)

- 다. 회사소개서(최근 3년간 실적증명서 포함-실적증명서는 붙임 5 양식 참조) 1부
- 라. 공사 제안서 1부
  - 견적서(부가세포함) 및 산출내역서, 공사계획서 및 시방서 포함할 것
  - 견적서 및 산출내역서는 붙임 4 양식으로 작성 요망
- 마. 각종 증명서 사본 각 1부
  - 사업자등록증(원본 대조필), 전문건설업 관련 면허증(원본 대조필), 국세-지방세 납부증명서(입찰일 기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), 인감증명서 포함할 것
- 바. 입찰보증금
  -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
  - 사업자번호 204-82-02042,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
  - 보증기간은 제출 마감일로부터 30일 이후일 것
- 사. 기타 본회가 요청하는 서류
- 아. 위 가~사까지의 모든 원본서류와 스캔한 파일(USB) 함께 제출

#### 4. 입찰일정(안)

구분	세부내용	일정	장소
입찰공고	▶ 본회 홈페이지 입찰 공고	2024. 9. 23.(월)	대한한의사협회 홈페이지, 나라장터
↓			
입찰서류 제출	▶ 입찰 관련 서류 제출	2024. 9. 23.(월) ~ 10. 4.(금) 15:00까지	대한한의사협회 회관
↓			
설명회 (각 업체)	▶ 각 업체별로 PT 등 설명회 실시(1차 서류 합격 업체)	2024. 10. 10.(목)	대한한의사협회 회관
↓			
계약체결	▶ 낙찰자 계약체결	2024. 10. 16.(수)	대한한의사협회 회관
↓			
공사완료	▶ 공사 및 준공 완료	2024. 11. 8.(금)	-

※ 상기일정은 내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- 입찰참가 접수마감 : **2024.10.4(금), 15:00까지**
- 제출처 : 서울시 강서구 허준로 91(가양동 26-27) 대한한의사협회

- 담당자 : 회무경영국 총무비서팀 박한별 대리(02-2657-5066)
- 제출방법 : 우편 또는 방문 제출

## 5. 낙찰자 선정방법

-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각 업체별 설명회(PT) 내용을 심사하여 적격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(개별 통보)
- 참고사항
  - 입찰참가 접수마감 후 한달 이내에 선정 예정.
  - 평가결과와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.

## 6. 입찰보증금, 하자보증 등

- 입찰보증금율 : 공사금액의 10%
  - 낙찰자가 소정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본 협회에 귀속됩니다.
- 하자보수이행보증금율 : 공사금액의 10%
  - 하자보수이행보증기간 : 3년

## 7. 유의사항

- 이 제안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제출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시에는 선정 후에도 계약 해지할 수 있습니다.
- 기타사항은 회무경영국 총무비서팀(02-2657-5066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. 9. 23.

# 대한한의사협회

- ▣ 붙임 : 1. 입찰참가신청서 1부.

2. 서약서 1부.
3. 시방서 1부.
4. 원가계산서, 공중내역서 등 양식(별첨) 각 1부.
5. 실적증명서 1부.
6. 설계도면 1부(별첨). 끝.



#붙임 2.

## 입찰 서약서

- 회 사 명 :
- 사업자등록번호 :
- 대 표 자 :
- 입찰건명 :

1. 제출된 모든 서류는 사실임을 확인하며, 만일 허위 기재사항이 확인되거나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번 입찰에서 제외됨은 물론 향후 다른 입찰의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2. 귀 회의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, 평가결과에 순응하며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.

2024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대 표 자      성 명      (인감날인)

대한한의사협회장 귀하

#붙임 3.

# 시방서

## (대한한의사협회 가양동회관 옥상 방수공사)

- 공사명 : 대한한의사협회 가양동회관 옥상 방수공사
- 공사기간 :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
- 공사 범위 : 회관 옥상 바닥 및 파라펫 전체
- 재료 : KS 및 ISO인증제품 사용
- 시공 방법

### 1. 일반사항

- 1) 사업수행을 위하여 본 시방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 후 방수공사에 임한다.
- 2) 제시된 도면은 본회에서 시공하고자 하는 장소를 표시 했으며 시공에 필요한 각종 재료, 자재, 장비는 공사 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.
- 3)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4) 공사중에는 공정별로 감독관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,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 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.
- 5) 공사의 진척, 인력의 투입, 재료의 반입, 소비, 기타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간에 보고한다.
- 6) 시공사는 공사 진척에 따른 기성 현장사진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, 준공 후 제출 하는 준공계 내용에 공사 전후를 사진으로 비교·정리하여 첨부한다.
- 7) 시공사는 감독관이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8) 시공사는 감독관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.
- 9) 시공사는 현장내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.
- 10)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, 시공사가 제출한 제안서 상의 하자로 인한 손실 또는 피해, 기타 사업 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시공사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.
- 11) 감독관은 시공 수행자가 업무 추진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성실히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, 시공사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시공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자를 교체하여야 한다.
- 12) 시공사는 공사소음, 분진발생 등에 대한 예방책을 강구하여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13) 공사완료시는 가설물 철거, 기존물 손상 부분의 원상복구 및 청소 완료후 사용검사를 받는다.

## 2. 세부 사항

### 가. 공통사항

- 1) 방수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의 규격, 사양, 품질, 성능, 효율 등은 관련법이나 규정이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. 다만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따르며, 감독관 승인 후 적용한다.
- 2) 방수공사에 사용되는 장비, 자재 등은 성능과 안전도가 검증된 KS인증 제품과 형식 승인된 제품 혹은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.
- 3) 시공사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임명 후 발주기관에 보고하여야 하며, 책임자는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. 작업 인원은 개인별 작업에 적합한 안전장비(안전모, 안전화, 안전고리, 방진마스크 등)를 착용하여야 한다.
- 4) 업무 총괄책임자 및 작업단계별 책임자는 과업 공정의 전 과정을 전담 관리하여야 한다. 다만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감독관과 협의, 책임자를 변경할 수 있다.
- 5) 본 사업에 필요한 관련 인.허가 또는 검사를 받아야 할 경우, 이에 대한 처리 및 소요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6) 모든 화학물질(방수제, 신너 등)은 위험물로 취급하여 현장내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.
- 7)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 일체는 시공사가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- 8) 과업수행 시 발생하는 폐기물은 시공사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반출하여야 하며 완료 시 작업 현장을 정리 및 청소하여야 한다.
- 9) 현장가설물 및 창고의 설치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며, 반드시 설치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.
- 10) 시공사는 과업수행 시 관련 법규에 따라 철저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. 과업수행 중 발생한 화재, 도난, 유실, 손상과 시공사 및 하수급자의 종업원 또는 고용원의 안전 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.
- 11) 시공사는 사업기간 동안 기상 및 환경오염 관련 예방·대비책을 철저히 강구하여 시행해야 한다.
- 12) 시공사가 계약조건을 위배하여 설치·제작된 부분은 재시공, 보완하여야 한다. 감독관이 지적한 사항의 보완·수정작업 미이행 시 감독관은 다른 방법으로 제거 또는 보완할 수 있으며, 이로 인한 발생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.
- 13) 시공사는 준공 완료한 현장의 하자 발생 시 관련 검토 및 보수를 하자담보 기간(준공 후 3년) 내에 처리하여야 하며, 그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하여야 한다.



## 나. 시공 세부사항

### i. 바탕면 정리

- 1) 시공 바탕면의 유해한 먼지, 불순물, 덧씌운 부분, 들뜬 부분, 타방수제 사용부분(실리콘 등)은 모두 걷어내어, 바탕면이 평탄하고 청소 또는 양호한 상태에서 시공한다.
- 2) 부식된 바탕면은 공구를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한다.
- 3) 역구배로 인해 물이 고이는 곳이 없도록 물 구배가 바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불량인 곳은 바로 잡는다.
- 4) 바탕면 철거가 끝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마대, 포대 등에 담아 반출하고, 깨끗이 청소한다.
- 5) 옥상에 설치된 수전전력반 및 실외기 등은 바닥면 정리 작업 이전에 미리 보양한다.
- 6) 바탕면을 점검하여 심하게 요철진 부분을 연마기를 사용하여 요철진 바닥면을 평활하게 작업한다.
- 7) 연마작업 후 고성능 진공청소기 등을 이용하여 연마 시 발생된 미세한 먼지를 완전히 제거한다.
- 8) 신축줄눈, 조인트 부분의 충전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백업제 충전 후 탄성실란트로 실링하여 표면조정한다.
- 9) 신축줄눈이 교차하는 지점에 탈기반을 설치하여 콘크리트 내 함수율을 낮춰준다.

### ii. 홈통 교체 공사

- 1) 홈통 재질은 스테인레스 제품으로 하며, 기존 홈통이 설치된 위치와 동일하게 외벽에 설치한다.
- 2) 홈통은 수직으로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.
- 3) 스테인레스 선홈통의 연결은 스테인레스 재질에 맞는 용접을 하여 일그러짐이나 곰보가 없도록 매끄럽게 연결하여야 한다.
- 4) 홈통걸이의 설치간격은 도면에 지정이 없는 한 120cm 이내로 한다.
- 5) 선홈통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방향에 대해 층당  $\pm 10\text{mm}$  이내, 전체로는  $\pm 20\text{mm}$  이내로 한다.
- 6) 설치된 홈통은 페인트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오염되었을 경우 깨끗이 제거한다.
- 7) 설치된 홈통은 쓰레기, 모르타르 찌꺼기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며, 준공 전에 배수 상태를 검사하여 이상이 없도록 한다.

### iii. 방수 공사

- 1) 프라이머는 현장에 따라 제품을 선정하여 사용한다.
- 2) 프라이머는 붓, 롤러,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여 도포한다.
- 3) 프라이머 도포 후 적정시간(4시간 이상) 동안 건조시킨 다음 후속 공정을 진행하되 오염이 발생되지 않게 하여야 한다.

4) 프라이머는 부분적으로 후도막이 되지 않도록 균일하게 도장하며, 하도 처리가 안 된 부분은 중도 도장 시 기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빠짐없이 도포한다.

5) (폴리우레아 시공 시)

- 폴리우레아 도장 전에 바탕조정재를 선 도장하여 폴리우레아 방수층의 내구성을 확보하고, 핀홀 발생을 방지한다.
- 바닥과 파라펫의 연결 부위는 최소 15cm 이상 겹쳐서 도장한다.
- 수지를 약 60°C 정도로 가온 시킨 후 2액형 전용도장 스프레이 장비를 사용하여 표면에 도포한다.
- 1차 도포 후 스프레이 상태를 조사한 후 시공결함 부위나 두께가 일정두께 이하인 부분은 재도포를 실시한다. (재도포는 1차 시공 후, 24시간 이내에 한다.)
- 폴리우레아 시공 완료 후, 1시간 ~ 3일 이내에 상도재의 주제와 경화제를 제품의 적정 혼합 비율에 맞춰 혼합 후 도장한다.

6) (폴리우레탄 시공 시)

- 하도 도장 후 3시간이상 48시간 이내에 하도 도막 위의 모든 오염물을 제거하고 도장 면적 및 도막두께에 대한 소요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우레탄 방수제의 주제와 경화제를 지정된 비율로 혼합한다.
- 주제와 경화제의 혼합은 반드시 전동교반기를 사용하고 혼합 후 바로 작업하지 않고 5분 정도 숙성시켜 기포의 발생을 방지한다.
- 잘 숙성된 중도제를 바닥에 롤러, 레기 또는 헤라를 사용하여 도막두께에 맞추어 굽거나 퍼면서 도료가 전면에 잘 퍼지도록 도포한다.
- 1차 도포후 24시간(18°C기준) 경과한 다음 도막의 이상유무를 점검하고, 기포가 생긴 곳이 있으면 칼로 올려내어 보완한다.
- 중도작업 후 도포면이 완전 경화된 후 전체 중도층을 점검하여 미비한 곳은 보강작업 하고, 중도작업이 완전히 완료되었다고 판단되면 우레탄 상도를 도장한다.
- 상도는 태양 및 각종 외부의 환경으로부터 방수층을 보호하고 도막의 노후를 방지하므로 빠짐없이 시공하여 마감한다.

7) (시트방수 시공 시)

- 시트 간 조인트 보강 시에는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꼼꼼히 확인하며 부착한다.
- 시트 부착 시, 시트와 바탕면, 시트와 시트 연결 접합부에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고무 롤러, 고무헤라 등으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공기를 빼면서 부착 시공한다.
- 시트 간 연결접합 겹침 폭은 40mm 이상으로 겹쳐서 시공한다.
- 시트 접착 완료 후, 탑코팅 제품을 도포하여 내구성을 확보한다.

#### iv. 준공 검수

방수공사 종료 후 아래 사항들을 빠짐없이 검수한다.

1) 방수층의 구성 상태, 결함(찢김, 들뜸 등) 상태 및 끝 부분(치켜올림부,감아 내림부 등)의

처리상태

- 2) 방수층의 겹침부(2겹, 3겹, 4겹 붙인 부분 등)의 처리상태
- 3) 드레인, 파이프 등의 돌출물, 위생기구 등의 설비물을 붙인 장소의 처리상태
- 4) 경사지붕, 슬래브 및 지하 외벽의 경우에는 물의 흐름 방향에 대한 겹침부 처리방법과 처리상태
- 5) 탈기장치 등을 두는 경우 사용재료나 고정상태, 설치위치 및 개수완성 시의 검사 및 시험
- 6) 규정 수량이 확실하게 시공(사용)되어 있는지의 유·무
- 7) 방수층의 부풀어 오름, 핀 홀, 루핑 이음매(겹침부)의 벗겨짐 유·무
- 8) 방수층의 손상, 찢김(파단) 발생의 유·무
- 9) 보호층 및 마감재의 상태



#붙임 5.

## 실적증명서

신청인	업체명(상호)				대표자	
	영업소재지 (주소)				전화번호	
	사업자등록번호 (주민등록번호)				제출처	
	증명서 용도		입찰서 제출용			
사업수행 실적내용	사업명					
	사업개요					
	총 사업금액(원)		금 원			
	계약번호	계약일자	계약기간	이행실적		비고
				비율(%)	실적(원)	
		~				
증명서 발급기관	위 사실을 증명함					
	년 월 일					
	기관명 : (인)					
발급부서 :						
전화번호 :			담당자 : (인)			

※ 공사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준공실적에 한하며,  
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